「평창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21년 05월 03일 지광천 의원이 발의하고, 2021년 05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.

1. 제안이유

평창군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·지원함으로써 퇴직 공무원들의 군정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동우회 지원사업 범위(안 제3조)

나. 동우회 지원신청(안 제4조)

다. 보조금관련 준용사항(안 제5조)

3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「지방행정동우회법」이 '20년 3월 제정됨에 따라

평창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퇴직 공무원들의 군정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에 목적이 있습니다.

○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5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

안 제3조에서는 동우회 지원사업 범위

안 제4조에서는 사업 신청

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관련 준용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.

○ 조례안의 보조금 지원은

「지방행정동우회법」 제14조제2항 **“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”**를 근거하였으며,

보조금 집행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안 마련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.

다만, 보조사업 결정 시에는

타 단체 보조사업과의 중복여부, 효과성 등과 관련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겠습니다.

4. 참고자료 : 관계법령

「지방행정동우회법」